

충청북도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1994년 1월 19일

나. 회부일자 : 1994년 1월 19일

3.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수당규정개정(대통령령 제14074호, '93.12.31)에 따라
- 동규정 [별표 9]의 장려수당지급대상중 일부항목의 지급액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개정

4. 주요골자

- 장려수당지급항목 신설

수 당 지 급 대 상	지 급 액	비 고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	월 180,000원	현재는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서 금액을 일률적명시(50,000원)
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	월 150,000원	"
하수, 폐수 및 쓰레기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	월 120,000원	"

5. 검토의견

충청북도 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현행 조례명칭중 "의료업무등의"을 삭제하여 명칭 변경과 아울러 지방행정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열악한 근무환경 분야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특수업무수당으로 장려 수당을 신설 지급함으로써 이들에 대해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처우개선을 위하고자 하려는 내용으로서 현행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의거 일률적으로 명시된 50,000원의 지급 규정에 대하여 하수, 폐수 및 쓰레기 처리업무를 담당하는 근무자에게는 월120,000원을, 분뇨처리업무를 담당하는 근무자에게는 월150,000원을,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자에는 월180,000원을 지급 할 수 있도록 규정 하려는 것으로 본개정조례안은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처우개선 차원의 장려수당을 지원 하고자 개정하는것으로 승인하여 줌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6. 칙 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 조례 중 개정조례안